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07
----------	------

발의연월일 : 2020. 11. 11.

발 의 자 : 이주환 · 김기현 · 박덕흠
양금희 · 이달곤 · 이철규
임이자 · 전봉민 · 정동만
황보승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시설 등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허가관청 등은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허가관청 등이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신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 ①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3조(과태료) <신 설></p> <p>① ~ ④ (생 략)</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제43조(과태료) ①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 ⑤ (현행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p> <p>⑥ -----제5항----- ----- ----- ----- -----.</p>